

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개요

□ 추진 배경

-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대상 서비스의 질 및 환자 안전성을 평가,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별 지정하여 한국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신뢰도 제고

*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(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)

□ 주요 내용

- (주관기관)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(평가기관) 의료기관평가인증원
- (평가대상)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희망하는 의료기관
 - *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 획득하여야 신청 가능
- (평가기준)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(유치실적, 전문인력 보유, 의료분쟁 예방 등) 및 환자안전체계(안전보장, 환자진료, 감염관리 등)로 2개 영역, 32개 기준, 13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
 - *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“환자안전체계” 평가를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인증으로 대체하여 “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”에 대해서만 평가
- (지정절차) 평가지정 공고(연1회 이상) → 평가지정 신청 → 현지조사* → 조사결과 확인·분석 → 지정심의위원회** → 결과통보 및 복지부 보고
 - *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평가위원 2인 및 외국어 조사보조원 2인이 현지조사 시행
 - ** 평가 및 지정, 제도 개선 등 심의를 위해 2년 임기의 5-10인 규모로 구성
- (평가비용) 병원급 이상 57만원, 의원급 114만원
- (지정혜택) 지정 의료기관 홍보 및 지원
 - 지정서·지정마크 교부, 정부협약에 따른 의료진 해외연수 또는 외국인환자 우선적 배정, 온·오프라인 홍보 지원